

인천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2024년 1차, 기초수준)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인천 제조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제조역량 강화를 위해 인천광역시가 지원하는 「인천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2024년 1월 3일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인천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기초수준) 구축 지원을 통한 제조역량 혁신 및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8개사 내외

* 도입공장 소재지 기준(본사 소재지와 무관)이며, 동일 사업자인 경우 중복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지원범위 : 스마트공장 구축비용(총 사업비)의 50%,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구축수준 ¹⁾	인천시 지원금(기업당, 최대) ²⁾	지원규모	협약기간 ³⁾
인천형 스마트공장	기초	5천만원(총 사업비의 50%)	8개사 내외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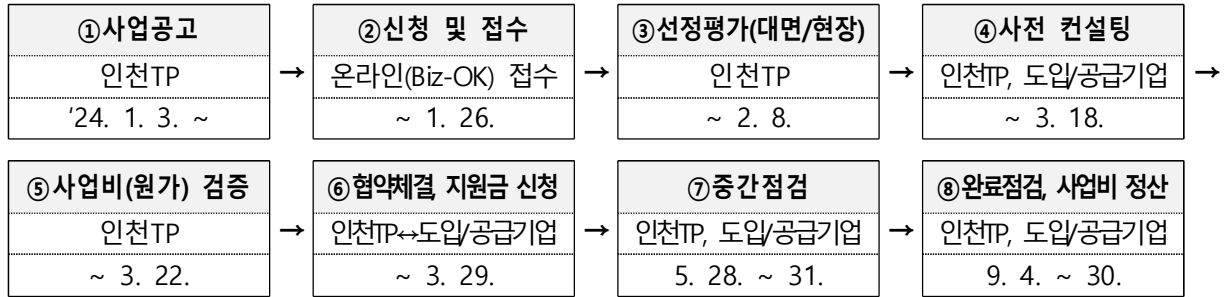
1) 타 지원사업을 통한 스마트공장 구축이력이 있는 경우 신규 시스템(솔루션) 도입에 한하여 인정

예시. 중기부 지원사업을 통해 MES(기초수준)를 도입한 A사가 생산설비를 달리하여 MES(기초수준)를 신청하는 경우 ⇨ 불인정
중기부 지원사업을 통해 MES(기초수준)를 도입한 A사가 동일 생산설비에 대해 FEMS(기초수준)를 신청하는 경우 ⇨ 인정

2) 사전 컨설팅, 기술임치 및 회계법인 검증비용은 인천시 지원금으로 전액 편성 가능
(단, 부가가치세, 보증증권 발급/금융이체 수수료 등 기타 제비용은 전액 도입기업 별도 부담)

3) 협약기간은 사업비 정산기간을 포함하며, 별도의 기간 연장 없음

□ 추진절차(계획)



2. 참여기업 모집

□ 공고 및 접수

- 공고/ 접수기간 : 2024년 1월 3일(수) ~ 26일(금), 18:00 한
- 공고방법 : 인천TP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비즈오케이(Biz-OK) 사이트 등
- 접수방법 :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 온라인 접수
- 접수서류

1. 사업신청서(서식①) 1부 및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①-1, 도입/공급기업 각각) 2부
2. 사업계획서(서식②) 및 참여 공급기업 현황(서식②-1)
3. 도입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공장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이상 제출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
4.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

□ 참여자격

- 도입기업 : 스마트공장 도입을 희망하는 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 공장 소재지 기준(본사 소재지와 무관)이며, 동일 사업자인 경우 중복지원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 제외

※ 참여 제외대상 (공고일 기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기관의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기업(선정평가위원회 판단)
-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과제를 신청한 기업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지원분야와 과제 내용이 상이할 경우(선정평가위원회 판단)
- 사업기간 중 타 시로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

- 공급기업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중 도입기업이 지정*하여 매칭한 기업

* 운영기관(인천TP)에 의한 컨소시엄 매칭지원 없음

3. 주요 사업내용

□ 추진절차

추진절차	추진주체	세부 수행내용
신청(서) 접수 및 요건검토	인천TP, 도입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접수) 인천TP 홈페이지 및 비즈오케이 등 유관기관 사업공고,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 온라인 접수 ○ (요건검토) 참여자격 및 결격사유 확인, 요건검토 결과 통보,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
↓		
선정평가	인천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면평가) 평가위원회 구성,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를 통한 사업계획(서) 타당성/적정성 심사 ○ (현장평가) 현장실사를 통한 참여자격 적격 여부 판단
↓		
사전 컨설팅 (전문가 진단)	인천TP, 도입/공급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 도입기업별 전문가 매칭 및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계획 보완 ○ 사전 수준진단 2회, 요소별 세부진단 3회, 개선방안 도출 5회 등 10회 ○ 협약대상 도입기업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전 컨설팅 완료
↓		
사업비 검증	인천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기업의 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한 원가 적정성 검증 ○ 외부 원가계산 전문기관(인천TP 별도지정) 외주를 통한 객관성 확보
↓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인천TP, 도입/공급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계획 확정 및 협약체결 (3월 29일 한 완료) ○ 제출서류 확인 후 지원금 선지급 (협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중간점검	인천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컨설팅 매칭 전문가를 점검위원으로 우선 활용 ○ 중간보고서 및 현장 점검을 통한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점검
↓		
완료점검	인천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점검에 참여한 전문가(점검위원)와 인천TP 담당자로 점검반 구성 ○ 완료보고서 및 현장 점검을 통한 사업의 이행완료 여부 점검 ○ 사업비 사용실적 검증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집행내역 및 증빙 검증)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인천TP, 도입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 이행결과에 대한 최종 판정 ('성공', '보완', '실패') ○ '실패' 판정시 도입기업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 후속조치 ○ 사업비 잔액 등 지분정산 및 반납

* 추진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평가

① 요건검토 : 결격사유 확인(제조혁신센터)

- 신청서 등 제출서류의 진위 및 참여자격 적격 여부 확인

② 대면평가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및 적정성 심사

-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를 통해 60점 이상 기업 고득점순 선정

※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배 점
도입기업 역량 (30)	◦ 상시 종업원 수, 매출액, 수출액(해당되는경우), 영업이익, 부채비율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	10
	◦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10
	◦ 도입기업의 자부담비율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도입)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10
구축 필요성 (30)	◦ 스마트공장 구축 "주요 내용"의 범위가 명확하고, "목표수준"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	10
	◦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공정별 스마트화 추진 목표"의 내용이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목표수준" 달성에 적합한가?	10
	◦ 핵심성과지표 설정이 타당한가? (구축목표 - 구축내용 - 성과지표간 내용 연결, 기준수치/목표수치의 근거제시, 지표 계산식 제시, 기대효과금액 등의 적절성)	10
지원 적정성 (40)	◦ "데이터집계 포인트"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자동, 반자동, 수동)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10
	◦ "솔루션 기능 구성도"가 도입기업 업종의 목표수준에 부합되는 기능으로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10
	◦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과 "지원계획" 등에서 도입기업/공급기업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	10
	◦ "추진일정 총괄표"와 "산출물 예정 목록"간의 단계가 일치하며, "산출물 예정 목록"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5
	◦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기술력) 및 투입인력(개발PM 등)의 적정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5
합 계		100

③ 현장확인 : 사업계획(서) 및 사업장(현장) 대조 확인

- 참여자격 '적격' 여부 판단
- 참여자격 '부적격' 기업을 제외하고, 대면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최종 1배수 (지원사업비 기준)의 참여기업 및 3개사 내외의 후보기업 선발

※ 평가항목

확인 항목		확인여부
사업계획서 대조·평가	◦ 구축 대상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휴·폐업 등)	적합/부적합
	◦ 사업계획서(현행)와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	적합/부적합
	◦ 기 보유설비 이상유무(정상가동 등)	적합/부적합
	◦ 과거 정부지원 받은 스마트공장 구축시스템 활용여부	적합/부적합/해당없음
참여자격 적격 여부		적격/부적격

사전 컨설팅

- 도입기업별 관련분야 스마트공장 전문가 매칭 : 도입기업 선택
 - 스마트공장 전문가 POOL(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활용
- 스마트공장 사업계획(서) 사전 컨설팅* : 스마트공장 전문가→도입기업
 - 도입기업 선정통보(스마트공장 전문가 매칭)일로부터 1개월 이내 10회 이행
 - 사업장의 스마트화 수준 진단, 현황분석 및 요구사항 점검
 - 도입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완

* 전문가 수당(회당 300천원)은 인천시 지원금으로 전액 편성

원가계산

- 과도한 장비도입 제한 및 사업비 산출기초 투명성 확보
 - 사업비 중 H/W 구입비 및 N/W 구축비는 총사업비의 60% 이하로 제한
 - 대가산정방식(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제정)에 의한 적정 S/W 개발비 산정
 - 도입기업의 참여인력 인건비 등 현물출연 불인정
- 도입기업의 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한 원가 적정성 검토
 - 외부 원가계산 전문기관 협력(인천TP 지정) 및 증빙자료 외주 검증
 - 도입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비 산출내역 증빙 및 사업계획(서) 보완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 인천TP-도입기업-공급기업 3자간 협약체결
 - 협약대상 도입기업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전 컨설팅, 사업비 검증 완료 및 지체없이 협약체결 이행

* 기한 내 협약 미체결시 선정기업 자격 취소 및 후순위 후보기업 대체

- 사업비 지원금 선지급 (인천TP→도입기업)
 - 협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인천시 지원금을 사업 전용 금융계좌로 지급

점검 및 최종평가

○ 중간점검

- 협약 체결일로부터 50일 이내,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화 이행사항에 대해 도입/공급기업이 중간보고서 제출
- 중간점검 결과 보완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도입기업은 점검일로부터 2주 이내 시정 조치
- 중간점검 결과 점검위원의 중단 의견 또는 기한 내 보완 요구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협약해지 및 후속 조치 가능

○ 완료점검 및 최종평가

- 협약 종료일 기준 30일 이전까지,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화 이행결과에 대해 도입/공급기업이 확인(날인)한 완료보고서와 제반 서류(단계별 산출물,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및 납품검수 확인서 포함) 제출
- 도입기업은 사업비(예산) 계획에 의한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 사용실적 보고서 작성요령 준수 여부 및 사업비 집행을 뒷받침하는 지출증빙 및 회계기록의 검토 결과에 대해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서)*을 완료점검일로부터 14일 이내 인천TP로 제출

* 개인 회계사 사업자 제외, 검증비용은 인천시 지원금으로 전액 편성

- 도입기업은 공급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결과물의 유지관리 및 보호 의무에 따라 결과물 일체를 임치기관에 2년 이상 임치관리하고 해당 증빙*을 완료점검일로부터 14일 이내 인천TP로 제출

* 기술임치 수수료는 인천시 지원금으로 전액 편성

- 도입기업은 공급기업으로부터 도입(설치 또는 개발)한 S/W, H/W, N/W, 기타 설비 등에 대해 무상 하자보수를 약속받은 하자보증보험증권 사본을 완료점검일로부터 14일 이내 인천TP로 제출
- 완료점검 결과 보완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도입기업은 점검일로부터 2주 이내 시정 조치
- 완료점검 결과 점검위원의 실패 의견 또는 기한 내 보완 요구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협약해지 및 후속 조치 가능
- 완료점검 결과(‘적정’ 또는 ‘보완 완료시’)를 토대로 도입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화 이행결과에 대해 ‘성공’, ‘보완’, ‘실패’로 최종 평가(판정)하고 ‘실패’ 판정시 도입기업으로부터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 후속조치 시행

□ 기타사항

- 지원금 전액환수 조건

1.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포기된 경우
2. 협약 이후, 도입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귀책 사유 등으로 과제를 포기 또는 중단할 경우
3. 점검 및 평가 결과 부적합 등의 사유로 과제를 실패할 경우
4. 사업종료 전 도입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분석 (기업 참여 의무)
- 사업비 등 제반여건에 따라 지원(선정)기업 수 등 사업내용 변경 가능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협약서 및 추진계획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세부관리기준(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2023. 10.)을 준용

4. 문의처

운영기관	주무부서	유선전화	전자메일
인천테크노파크	제조혁신센터	032) 260-0621	dawnfog6@itp.or.kr